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 306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5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다변화하는 문화예술 요구에 맞춰 중구문화재단의 역할이 확대·변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재단의 역할 전환(제1조)
 - 기존 공연장 운영 중심에서 주민의 삶과 가까워지는 지역문화사업 중심으로 재단의 운영 방향 변화
- 재단의 사업 확대(제4조)
 - 주민의 요구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재단 사업 내용 변경
- 임원 임명 방식 변경(제7조, 제9조)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 변경
 - 임원 관련 조항이 제7조, 제9조에 나뉘어 있어, 임원 임명 관련 내용은 제7조로 이동, 제9조 제2항 삭제
- 임원 명칭 변경(제7조~제9조)
- 직제개편으로 임원 명칭 변경

3. 의견제출

-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문화관광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(홍인동, 총무아트센터), 문의전화 : 3396-4612, FAX: 3396-8610, 전자우편 : bkm33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조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문화예술진흥”을 “지역문화진흥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 (재단의 사업) 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
2. 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, 도서관, 문화공간 등 위탁 공공시설 운영
3. 문화예술교육
4. 문화복지사업
5. 지역문화예술가·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
6. 문화창업지원
7. 문화예술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
8. 지역문화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
9.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10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7조 중 “사장”을 “대표이사”로 한다.

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감사는 선임직으로 한다.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1. 구청장
2. 대표이사
3. 문화예술 소관 국장
4. 예산업무 소관 국장

제8조 중 “사장”을 “대표이사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문화예술진흥</u>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<u>문화예술진흥</u>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2.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3.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· 관리 · 보급 및 조사 · 연구 4.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 5.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지역문화진흥</u>-----</p> <p>제4조 (재단의 사업) ----- <u>지역문화진흥</u> -----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 2. 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, 도서관, 문화공간 등 위탁 공공시설 운영 3. 문화예술교육 4. 문화복지사업 5. 지역문화예술가 ·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6. 문화창업지원 7. 문화예술 창작 ·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8. 지역문화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9.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)

제7조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
②(생략)

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, 사장은 지역문화기획, 문화예술 또는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한다.

④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⑤ 당연직이 아닌 감사는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(생략)

②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재단을 통할한다.

③ (생략)

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
10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7조(임원) ①----- 대

표이사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--.

----, 대표이사는 -----

-----.

-----.

④ 대표이사를 -----

-----.

⑤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감사는 선임직으로 한다.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1. 구청장

2. 대표이사

3. 문화예술 소관 국장

4. 예산업무 소관 국장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(현행과 같음)

② 대표이사는 -----

-----.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이사회) ①(생략)

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.

1. 구청장

2. 사장

3. 행정관리국장

4. 기획재정국장

③~⑤ (생략)

제9조(이사회) ①(현행과 같음)

② <삭 제>

③~⑤ (현행과 같음)